

# 디딤돌 동아리 운영내규

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

## 제1조(목적)

본 운영내규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(이하 '본센터'라 한다)의 동아리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자격)

동아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본센터의 동아리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2. 본센터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생 및 고양시 중심의 경기도 내에서 활동 중인 학습동아리로,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.

## 제3조(신청 및 승인)

동아리 조직 신고는 7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하여 본센터의 선발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1주일 이내에 활동계획서와 구성원 관련 서류를 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4조(임원 선출 및 조직)

1. 임원은 회장, 부회장 각 1명을 두고 총회 시 선출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기타 임원을 둘 수 있다.
2. 임원이 선출 되었을 때는 그 명부를 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5조(활동)

1.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아리는 당해 연도 내에 사업자등록 또는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한다.
2. 선발된 동아리는 매월 2회 이상 정해진 시간에 활동하여야 한다.
3. 모임 및 회의내용은 기록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4. 동아리 구성원들의 취·창업 활동내역을 월단위로 보고한다.

## 제6조(재정)

1. 동아리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고, 2020년 디딤돌사업과 관련된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센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2. 본센터는 필요한 경우 동아리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3. 재정지원을 한 경우, 동아리대표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센터에 보고하고 동아리 전 구성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## 제7조(규제)

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을 둔다.

1. 모든 동아리 활동은 사전에 본센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2. 동아리실 사용 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사용목적은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3. 동아리실 기물파손시 즉시 본센터에게 알리고,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.
4. 동아리실내 전열기구 및 취사도구 사용을 금한다.
5. 동아리 구성원의 개인적인 동아리실 사용을 금한다.
6. 모임에 관한 게시물 등 유인물을 작성 및 배포할 경우 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7. 동아리실 사용 후 뒷정리를 청결히 해야 한다.

#### **제8조(지원기간)**

동아리 조직의 운영지원 기간은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. 동아리의 연장지원 여부는 동아리의 요청시 본센터의 심사에 따라 결정한다.

#### **제9조(지원취소)**

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 본센터의 결의를 거쳐 기관장이 동아리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월 2회 이상 동아리 모임 또는 회의를 실시하지 않거나 활동이 극히 부진한 경우
2. 동아리 구성원이 최소인원에 미달하여 동아리를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3. 동아리가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활동을 한 경우
4. 동아리의 활동이 본센터의 운영규정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

#### **제10조(해체신청)**

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사유서를 본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.

## **부 칙**

-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기관의 결의에 따른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